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6. 11. 16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1월 4일 이종률의원외 4인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1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(96.11.13) 의회운영위원회 상정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종률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를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함 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만식)

- 본개정조례(안)은 현행 조례로 운영되고있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의 내용중 의원의 회기중 위원회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회기의 신축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시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로 현장확인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회의참석 여부를 회의록에 근거할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